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4호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1. 개정이유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출 지연 시 충분한 검토가 곤란한 실정임으로,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서는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운영전문위원회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회실(전화 042-600-5013, FAX 042-600-5019, E-mail : pjsj@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14일”을 “14일(업무보고서는 7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u>14일</u> 전까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u>10일</u>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u>14일(업무보고서는 7일)</u></p>

관 계 법 규

1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